

의안번호	제 259 호
의결 연월일	2019. . . (제 회)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

발의자	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8월 16일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9
----------	-----

발의연월일 : 2019년 8월 16일
발 의 자 : 이상욱, 박상돈, 최경천,
박형용, 심기보, 육미선,
허창원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나. 센터의 사업내용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 다. 센터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 라. 센터 운영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6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 - 66호
- 다. 협의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라.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되는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어 통역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사업
2.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3. 도 내 시·군 수어통역센터(이하 “시·군 센터”라 한다)의 서비스 평가 사업
4. 시·군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5. 시·군 센터 업무 지원 사업
6. 도 내 청각·언어장애인 관련 통계 조사·관리 사업
7. 도 수어통역 서비스 및 사례관리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8. 도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2.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7조(보조금의 관리)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 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비율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보조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p>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p>	<p>자. 수화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설</p>
-----------------------------	---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 소요 경비 등

3. 관련조문

- 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
- 안 제4조 (사업 내용)
- 안 제6조 (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의 관리)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 요인

-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및 수어교실 운영비 지원

나. 추계의 전제

- 연중

다. 추계결과 : '20년부터 향후 5년간 연 천원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 추계서 : 붙임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0년도)	2차년도 (2021년도)	3차년도 (2022년도)	4차년도 (2023년도)	5차년도 (2024년도)
세 출	1,699,582	320,124	329,728	339,620	349,808	360,302

※ ① '19년도(310,800천원) : '19년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295,500천원+15,300천원

② 1차년도(2020년도) 이후 : 전년도 대비 매년 3% 인상 계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도)	2차년도 (2020년도)	3차년도 (2021년도)	4차년도 (2022년도)	5차년도 (2023년도)	계
세 입						
세 출	320,124	329,728	339,620	349,808	360,302	1,699,582
수어통역센터 운영	304,365	313,496	322,901	332,588	342,565	1,615,915
수어교실 운영	15,759	16,232	16,719	17,220	17,737	83,667
재원조달	320,124	329,728	339,620	349,808	360,302	1,699,582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20,124	329,728	339,620	349,808	360,302
	지방세	320,124	329,728	339,620	349,808	360,30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민간 자부담)						